

# 한국세무사회

☎ 137-870 /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(서초3동 1497-16) / 홈페이지 <http://www.kacpta.or.kr>  
전화 02)587-6021 / 팩스 02)521-9459 연구기획팀 팀장 : 김 옹 희 담당 : 권 효 상

문서번호 : 연기332-192호

시행일자 : 2015. 5. 14.

수 신 : 전회원님

참 조 :

제 목 :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세무사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하여 세무사의 권한과 위상을 강화하였습니다.

1. 저희회는 지방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‘세무사가 수입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과세관청(지방자치단체장)에게 요청’할 수 있도록 하고, ‘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’하도록 지방세기본법개정을 의원입법(주호영의원)으로 추진한 결과 동 법률개정안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(2015.3.2)와 법제사법위원회(2015.4.29)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달 2015. 4. 30. 국회를 통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.
2. 그 동안 저희회는 세무사의 권한과 위상을 제고하기 위하여 “세무사가 수입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관세관청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경정청구기간을 5년으로 확대”하는 국세기본법개정을 추진한 결과 지난 2014. 12. 2. 세무사가 세무대리하고 있는 납세자에 대한 세무정보를 과세당국에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국세기본법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14. 12. 23. 최종 공포되었습니다.
3. 이에 저희회는 지방제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세무사가 과세관청(지방자치단체장)에게 납세자의 세무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,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도록 지방세기본법개정법률안을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의장인 주호영 국회의원을 대표발의로 하여 지난해 국회에 제출한 후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한 결과 마침내 이번에 법 개정의 성과를 이룩하였습니다. 이에 법개정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를 얻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.

- 다 음 -

첫째, 세무사가 납세자의 지방세 관련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요청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제고시키고, 권한을 한층 강화하였습니다(지방세기본법 제51조 제1항).

- 그동안 수입납세자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세무정보는 오로지 납세자만이 지방자치단체에 직접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, 납세자의 위임을 받은 세무사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조력하기 위해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직접 자신의 세무정보를 지방자치단체에 청구해서 받아 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.
- 그러나 이번에 우리회가 지방세기본법을 개정함에 따라 앞으로 세무사는 지방세에 대해서도 납세자의 권리행사를 대리하거나 조력하게 될 경우에는 직접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세무정보를 청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러한 법 개정에 따라 앞으로 회원님들은 그 동안 겪었던 고충을 해소하였을 뿐만 아니라 납세자에 대한 신속한 권리구제 및 국세행정의 효율성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어 세무사의 위상을 높였습니다.

둘째, 지방세도 국세와 마찬가지로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여 회원님들께서 수입하실 수 있는 경정청구업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(지방세기본법 제115조).

- 우리회는 국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지방세기본법에서는 납세자의 경정청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있어서 국세와 지방세간의 경정청구기간 상충문제로 인해 납세자의 권익이 제대로 보장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.
  - 그러나 이번에 우리회가 지방세에 대한 경정청구기간을 국세와 동일하게 5년으로 확대함에 따라 세무사가 대리하는 경정청구 신고 등의 업무도 많아 질 것으로 기대됩니다.
4. 우리회는 회원님들이 겪고 있는 세제와 세정불편사항을 개선토록 계속하여 노력할 것입니다. 감사합니다. 끝.

한 국 세 무 사 회

